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재 ‘서울특별시 외’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2026년 8월 19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된 ‘법인택시 주40시간제’를 2028년 8월 19일까지 추가 유예하되, 2028년 8월 20일 이후의 ‘주40시간제’ 적용 사업구역은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의2).
- ‘주40시간제’ 위반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되,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% 이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‘주40시간’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함(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안 제11조의2 단서 신설).
-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·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·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13조제3항 및 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□ 조문 규정방식 정비(안 제11조의2 및 안 제13조제3항)

안 제11조의2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‘법인택시 주 40시간제’¹⁾를 향후에는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2028년 8월 19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되 보유 면허대수의 40% 이내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, 2028년 8월 20일부터 적용할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다만, 조문의 각 ‘호’ 간에는 같은 수준의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나, 안 제11조의2제1호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적용기한을, 같은 조 제2호는 위 제도의 향후 적용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제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, ‘항’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음.

아울러, 안 제13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관련 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²⁾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

1)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(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)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「근로기준법」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

부 칙 <법률 제16500호, 2019. 8. 20.>

제2조(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에 대한 적용례)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19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)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택시 운행정보의 관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·관리하는 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다.

③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(이하 이 조에서 “전산자료”라 한다)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.

도록 하려는 것이나, 요청 대상자에 관한 법문 표현이 한 문장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각 호·목으로 조문정리하였음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1조의2(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) <u>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「근로기준법」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	제11조의2(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) ① <u>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1. 2028년 8월 19일까지: 서울특별시	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2. 2028년 8월 20일부터: 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사업구역	③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3조(택시 운행정보의 관리) ①·② (생략)	제13조(택시 운행정보의 관리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

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·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·요금의 결제 자료(이 경우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<신 설>

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
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의3에 따른 부가통신업자

<신 설>

③ -----

-----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-----

-----.

1.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내에 결제단말기 등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객이 지불하는 운임·요금의 전자적 결제를 대행 또는 정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(개정안 제1호와 같음)

나. (개정안 제2호와 같음)

2. 일반택시운송사업자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
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